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24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이양수・이인선・박덕흠

최형두 · 배준영 · 조은희

서범수 · 박준태 · 박성훈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갑문, 운하 등 항만에서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안전한 조작을 위하여 시설장비관리자로 하여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시설장비가 있더라도 현행법은 시설장비의 사용중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장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설장비 관리자는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항만에서의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용 연수가 오래되어 노후화된 시설장비나 대형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장비를 일시적으로 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하여 시설장비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원활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시설장비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장비를 재사용하기 전에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5호 신설).
-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받도록 함(안 제33조의2 및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설장비의 정기검사 등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 신설).
- 라. 정밀안전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기검사 등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0조제3호 및 제113조제1항제6호·제7호 신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시설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 2. 시설장비를 철거하려는 경우
- 3.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중지하려는 경우
- 4.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제33조제1항제3호 중 "하는 검사"를 "하는 검사(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시중지 기간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사용재개검사: 사용이 일시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하는 검사
- ④ 관리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3조의2(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진단 단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한다.
 - ③ 관리청은 정밀안전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정밀안전진단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3조의2에 따른 시설장비의 정밀안전진단등

제35조제1항 중 "검사업무"를 "검사업무(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 단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3조제3항"을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회"를 "1회 이상"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1호라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 마.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98조제1항제22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110조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한 자제113조제1항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8호까지로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7호·제8호"를 "제1항제9호·제10호"로 한다.
 - 6.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7.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9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갑	제31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문, 운하, 하역장비, 그 밖에 조	
작이 필요한 항만시설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	
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	
•관리하는 자(관리청은 제외	
한다. 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는 <u>해당 시설장비를 설치</u>	<u>다음 각 호의</u>
<u>하거나 철거하려는</u> 경우에는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	
다.	
<u><신 설></u>	1. 시설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u><신 설></u>	2. 시설장비를 철거하려는 경우
<u><신 설></u>	3. 시설장비의 사용을 일시중지
	하려는 경우
<u><신 설></u>	4.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일시중
	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개
	하려는 경우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	
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2. (생략)
-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 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생 략)<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
1.・2. (현행과 같음)
3
하는 검사(제31조제1항에 따
른 일시중지 기간에는 제외한
<u>다)</u>

- 4. (현행과 같음)
- 5. 사용재개검사: 사용이 일시 중지된 시설장비의 사용을 재 개하기 전에 하는 검사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관리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수 있다.

제33조의2(시설장비의 정밀안전 진단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 중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에 대하여 관리청이 실시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다음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점검 또는 진단 등을 받 은 시설장비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u>제33조</u>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

- 1. <u>「전기사업법」 제65조</u>에 따 른 정기검사
- 2. (생략)

<u><신 설></u>

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인	<u>}</u>
전점검(이하 "정밀안전진단등	,,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으려는	<u>-</u>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어	þ
<u>한다.</u>	
③ 관리청은 정밀안전진단등을	<u>) </u>
실시한 결과 시설장비의 보수	2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
되는 경우 시설장비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등의 실시 병	ኑ ን
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형	<u>}</u> -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검사의 면제 등) ①	_
	_
	_
	_
제33조	<u></u>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_
1.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_
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의2에 따른 시설장비]

의 정밀안전진단등

3. (생략)

② (생략)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관리 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u>검사</u>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하는 자(이하 "검사대행기관"이 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u>제33조제3</u> <u>항</u>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검사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④ (생 략)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u>1회</u>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를 확 인·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대 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받 아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경 우에는 검사업무의 개선을 명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 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검사업무의 대행) ①
검사업무(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33조제3</u> <u>항 및 제33조의2제2항</u>
 ④ (현행과 같음) ⑤ <u>1회</u> 이상

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 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승인 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 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 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u>라.</u> (생 략) 2.·3. (생 략) ② ~ ④ (생 략)

1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
마.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u>바.</u> (현행 라목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8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
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제) ①
• 도지사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	
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	
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	
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	
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5	
1조제5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	
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면	
허 • 협의 • 동의 • 승인 • 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인가・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	
고한 것으로 본다.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u>「전기사업법」 제62조</u> 에	2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	
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 ~ 27. (생 략)	23. ~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 설>

<u>3.</u> ~ <u>9.</u> (생 략)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신 설>

<u>6.</u>·<u>16.</u> (생략)

- ② (생 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0조(벌칙)
1.・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등을 받지 아니
<u>한 자</u>
<u>4.</u> ~ <u>10.</u> (현행 제3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제113조(과태료)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
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18. (현행 제6호부터 제16
② (현행과 같음)
3

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다. 다만, <u>제1항제7호·제8호</u> 의	<u>제1항제9호 · 제10호</u>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	
과 · 징수한다.	